2026학년도 북일여자고등학교 출결 지침(요약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내용</th><th>서류
(평상시)</th><th>서류
(시험기간)</th><th>제출기한</th></tr>
<tr><td rowspan="6">결석</td><td>질병</td><td>▶질병으로 인한 결석
(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병결)</td><td>1.결석신고서
2.진단서(의견서,진료확인서)
혹은 처방전
혹은 약봉투 등</td><td>1.결석신고서
2.진단서
(의사 의견서)</td><td>사유가 발생한
최종일 포함
출석일 기준
5일 이내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출석
인정
(공결)</td><td>▶법정 감염병
▶독감(인플루엔자), 코로나19
-독감 의심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
독감 확진이 아니더라도 당일(1일) 공결 처리
-확진 후 본인이 원하면 등교 가능(방역마스크 필수)
-의사 소견상 명시된 격리 기간 동안 출석 인정
-격리일이 명시되지 않은 의사 소견서의 경우,
최대 3일까지 출석 인정</td><td>1.결석신고서
2.검사결과서
혹은 진단서
(의사 의견서)</td><td>1.결석신고서
2.검사결과서
(당일만 인정)
혹은
격리일 명시된
진단서(소견서)
(격리기간 인정)</td><td>사유가 발생한
최종일 포함
출석일 기준
5일 이내</td></tr>
<tr><td>▶생리결석 - 월 1회
(생리 지각 및 조퇴, 결과도 월1회로 간주)
-결석 내용에 ‘극심한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움’ 기재</td><td>1.결석신고서</td><td>1.결석신고서
2.진단서
(의사 의견서)</td><td></td></tr>
<tr><td>▶경조사
<table><tr><td>결혼</td><td>형제, 자매, 부, 모</td><td>1일</td></tr><tr><td>입양</td><td>학생 본인</td><td>20일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사망</td><td>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</td><td>5일</td></tr><tr><td>증조부모, 외증조부모
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
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</td><td>3일</td></tr></table>-토요일, 공휴일, 재량휴업일 등은 불포함.
-사유 발생일 포함 전후로 실시 가능하며, 사망의 경우, 사유 발생 다음날부터 산정 가능.</td><td>1.결석신고서
2.해당자와 학생의
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
가족관계 표현된 부고장 등)
3.사안 증빙서류
(청첩장, 입양 증명서,
사망신고서 혹은 부고장 등)</td><td>동일함</td><td>사유가 발생한
최종일 포함
출석일 기준
5일 이내</td></tr>
<tr><td>▶천재지변 외
▶학교장 허가
-학교,시.도,국가 대표 대회 및 훈련, 산업체 실습
-특별교육 이수(학교내 봉사, 사회봉사)
-상담.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</td><td>1.결석신고서
2.사안 증빙 서류
(해당기관 발급 공문 등)</td><td>동일함</td><td>사유가 발생한
최종일 포함
출석일 기준
5일 이내</td></tr>
<tr><td>▶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-연간 15일 이내
※체험학습형
-가족행사참여,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, 가정학습,
기타 체험활동
반일 기준: (오전:8:20~12:20/오후:12:20~16:20)
※가정학습형
<u>(감염병 “심각”단계 시에만 가능, 반일 불가능)</u>

<u>※체험학습 신청 불허 기간 (학기 초 공지)</u>
-교내 정기고사 기간
-고사 후 이의제기 및 성적 확인 기간
(고사 종료후 첫 수업일로부터 수업일기준 5일)
-학기의 개학 첫 수업일로부터 수업일기준 5일
-2월 학년말 방학 개시 직전 수업일기준 5일
-원격수업(온라인 수업) 기간
-기타 학교장이 특정한 기간</td><td>1.교외체험학습신청서
(기간,장소,성인인솔자,계획)

2.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
(기간,장소,무엇을,어떻게, 소감 등 구체적으로 서술)

3.보고서 증빙자료
(인솔자,학생 인식가능 사진
(얼굴 블러처리 시 미인정)
혹은 입장권
혹은 참가확인서
혹은 학습결과물 등
*국외의 경우, 날짜 확인 가능한 비행기표, 선박티켓)</td><td>불허</td><td>1.신청서는
시작일로부터
출석일 기준
최소 3일전까지

2.보고서는
교외체험학습
최종일을
포함하여
출석일 기준
5일 이내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>▶학교장의 인정
-부모.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
-기타 합당한 사유</td><td>1.결석신고서
(해당 사유 기재)</td><td>사안별 협의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각</td><td colspan="3">▶지각처리 기준 - <u>교실 도착 08:20 이후</u>
▶질병지각, 기타지각 - 결석사유와 동일
-천재지변, 극심한 교통 정체, 교통 수단의 연착이나 고장 등은 기타 지각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결과</td><td colspan="3">▶수업시간 10분 초과 불참한 경우.
교과교사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20분 초과를 기준으로 적용
(단, 교사의 결과 시간 기록, 핸드폰 교실 보관 등의 조치를 따름. 교실 이탈 후 중대사안 발생시 무단결과처리)
▶교과교사가 담임교사에게 전달 → 담임교사가 NEIS 기록</td></tr>
</table>

◈ 같은 날짜에 지각, 조퇴,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**<u>미인정, 질병, 기타의 순으로 처리</u>**하되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안은 수업결손이 많은 경우로 입력하여 처리

◈ 질병지각, 질병조퇴, 질병결과 처리 절차는 **<u>질병 결석에 준함</u>**. 단, 관련 서류는 담임교사가 자체 처리

◈ 학급 담임교사는 매달 출결 서류를 수합, 정리하여 학생 확인서명 후 내부결재화
매달 NEIS ‘월 출결마감’ 후 출결 서류는 교무운영부로 모두 이관

□ 온라인 처리(24.9.23부터 시행) :

1. 별도 종이 서류 제출 없음
   (1) 접속:나이스 대국민 서비스-학부모 서비스-'자녀지원'-'교육활동신청'-결석신고서/교외체험학습신청서/보고서
   (2) **보호자 서명은 정자로 이름 기입 (단순한 줄긋기, 추상적인 도형 등 불가)**
2. 개인체험학습 신청
   (1) 신청서 : (수업일 기준) 체험학습 시작일로부터 최소 3일 전 신청,
   기간/장소/인솔자/체험학습 계획(요약식 혹은 서술식) 명시
   (2) 보고서 : (수업일 기준) 체험학습 최종일 포함 5일내 신청,
   기간/장소/체험학습 내용(요약식 혹은 서술식) 명시
   /증빙자료(**(얼굴 인식 가능한)인솔자+학생 동반 사진**, 입장권, 참가확인서, 학습결과물 등) 첨부
   (3) 온라인 신청(사전 신청)시 보고서 제출도 온라인으로만 가능
3. 결석 신고
   (1) 병결,기타결 : 증빙 자료 첨부와 함께 결석일 포함 (수업일 기준) 5일 이내 제출
   -병결의 경우 진단서,처방전,약봉투 등 첨부, 고사기간에는 진단서(혹은 의사 의견서) 첨부
   -증빙서류는 **인식이 쉽도록 배려. (접힌 부분 펴서 촬영, 사진 회전, 발생날짜에 하이라이트** 등)
   (2) 생리결,공결(경조사결) : 증빙 자료 첨부와 함께 결석일 포함 (수업일 기준) 5일 이내 제출
   -생리결석(월1회)의 경우 내용에 '**극심한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움**' 문구 기입
   (단, 고사 기간은 진단서 혹은 의사 의견서 첨부)

◈ 제출 서류 기한 예시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		1	2(개학일)	3	4	5
6	7	8(공휴일)	9	10	11	12
13	14	15	16	17(1회고사)	18(1회고사)	19
20	21(1회고사)	22(1회고사)	23	24	25	26
27	28	29	30	31		

1.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
   - 개학일 포함 출석일 기준 5일간 : 2일~9일(공휴일 8일은 출석일에서 제외됨)
   - 정기고사, 이의제기 및 성적확인 기간(고사 후 수업일 기준 5일, 공휴일 있을 경우 연장 가능) : 17일~29일
2. 10일~11일(2일간) 교외체험학습 신청시: 4일까지 신청서 제출, 17일까지 보고서 제출
3. 3일 조부상 발생 시: 3일~9일(서류는 15일까지 제출), 혹은 4일~10일(서류는 16일까지 제출)까지 인정결석
4. 24일 질병 결석 시: 30일까지 서류 제출